

예상보다 매출이 부진해 1년 후 가맹점 문 닫으면 위약금 안 내도 된다?



매출 부진 가맹점 폐점 부담 완화

가맹점이 중도에 폐점할 때 부과하는 위약금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불가피하게 폐업하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가맹점 출점 후 1년간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의 하한보다 낮아 가맹점을

중도 폐점하는 경우 **영업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

* 가맹 계약 중도 해지로 인한 가맹본부의 미래 기대 이익 상실(로열티 수익 등)에 따른 위약금으로, 시설 투자에 따른 위약금(시설 위약금)과 구분됨.

가맹사업거래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구분	세부 개정 내용
창업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공개서에 평균 가맹점 운영 기간 및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가맹본부의 지원 내역 추가 예상 수익 상황 근거자료(비치·열람 대상에 예상 수익 산출 근거 점포와 점포 예정지 간 거리 추가
운영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위 사실 유포, 영업 비밀·중요 정보 유출 사유 삭제 가맹점주의 시정조치 불이행 사유 삭제 공중의 건강·안전상 급박한 위해 사유에 명확성 및 긴급성 요건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영점 설치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신설 특정 점주에 대해 차별적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신설 점포 환경 개선비 회수에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지 않고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신설
폐업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점 후 1년간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여 폐점하는 경우 영업 위약금 부과 금지



경상남도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센터 이용안내

상담대상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등에 관련된 불공정거래 피해자 및 가맹희망자

상담범위

계약체결 전 단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유무 확인, 내용 검토, 계약 체결 전 주요 체크항목 안내

계약체결 후 단계

허위과장 정보제공, 가맹금 예치 의무위반, 가맹계약 갱신거절, 계약해지 절차위반, 점포환경 개선강요, 구입강제, 거래거절 등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

상담방법

방문 경남도청 본관 1층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우편 (우)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전화 (055) 211-7979

팩스 (055) 211-7779

온라인상담 경남도청 홈페이지

홈 > 분야별정보 > 경제통상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친구처럼 편안한
경상남도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055) 211-7979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체결 전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시는 가맹희망자 여러분!
경상남도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가맹계약 체결 전 필수 체크사항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를 계약체결일 또는 가맹금 수령일의 15일전에 제공 받았는지 확인하기!

가맹희망자는 14일의 숙고기간동안 충분히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검토하여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으면 이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1월 15일)이 지난 뒤인 1월 16일부터 가맹금 수령, 가맹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거래사·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로 단축

☑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정보공개서와 함께 제공받아 실제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주로부터 조언받기!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가 포함된 문서

※점포 예정지가 소재한 경남 도내의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경우, 이들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를 기재

☑ **예상매출액 산정서**(가맹점수가 100개 미만인 가맹본부 는 제외)를 제공받아 확인하기!

예상매출액을 구두로 제공하는 것은 금지!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을 설명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받으세요.

☑ 가맹계약서에 가맹사업법 제 11조의 필수 기재사항 (**가맹금, 계약기간, 영업지역설정, 계약해지사유, 가맹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사항을 확인하기!

위약금부과, 경업금지 등 해당내용이 과도한지를 상세히 확인하세요.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 내용



10년 계약갱신요구권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강요 금지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여서는 안됩니다.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맹본부가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 권한 있는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20%~40%)를 가맹본부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점포환경개선”이란 가맹점 점포의 기존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을 새로운 디자인이나 품질의 것으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거나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금지

가맹본부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분쟁조정신청,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협조, 조사에 대한 협조 등을 이유로 보복당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권 및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체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로만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광고, 판촉비 집행내역 통보 의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의 주요 예시!!



객관적인 근거없이 “평균 〇〇원 투자시 최소 ‘월 〇〇백만원의 매출, 월 〇〇백만원의 영업이익’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가맹희망자들에게 매출 및 영업이익이 보장되는 사업인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가맹본부가 상표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을 취득한 것처럼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출원 제 00-00호”, “등록 제00-00호” 등의 표현이 기재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실질적인 상권 분석을 하지 않고 소상공인진흥원 홈페이지의 상권분석자료 등만으로 광범위하게 상권 특성을 추정 후 ‘복합적 유동인구 발생’, ‘엄청난 유입인구가 발생’ 등의 상권정보를 제공한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업계 최저 창업비용이라거나, 경쟁사에 비해 창업비용이 가장 적은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가맹점수가 20~40여개에 불과함에도 개업 후 현재까지 한번이라도 계약이 체결되었던 가맹점 누적수를 대략적으로 추산하여 650개 가맹점이 성업 중이라고 정보를 제공한 경우

가맹본부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공개서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는 가맹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가맹계약체결 전 가맹금 반환을 요구한 때에는 가맹본부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 가맹계약 체결 후에는 4개월 내 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허위·과장 정보 등이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사실의 입증 필요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금 반환 요구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